



2022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방향

2021. 10.

교 육 부
(교원양성연수과)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교원연수 개요 및 현황	2
III. 비전 및 목표	5
IV. 교원 연수 중점 추진방향	6
1. 맞춤형 연수 지원	6
2. 미래형 연수 체제 강화	14
3. 교원 연수 내실화	18
V. 행정사항 및 협조 요청사항	23

【별첨】 2022년도 교원 연수 과정 편성 시 반영 요청 사항

I. 추진배경

-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교원의 입직부터 퇴직까지의 전 단계에 걸쳐 전문성·역량 신장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연수체제 구축
 - 단순 교원 생애단계에 따른 연수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개별 교원에게 맞춤형 연수체제 마련으로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지원
 - 교수자-연수생·연수생-연수생 간 자율적 의사소통 및 협력에 기반한 연수 방식으로 전환하여 연수의 효과성 및 만족도 제고
- (미래환경 대응)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 등 교육환경 대전환에 맞춰 교원 연수체제 패러다임 변화 필요
 - 코로나19의 장기화 우려에 따라 일상생활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Untact) 트렌드에 맞춰, 원격연수 기반 연수체제 마련
 - 미래 연수체제로의 도약을 위한 에듀테크 기반 연수 혁신, 디지털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추진
- (교원연수 질 제고) 교원연수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수기관 협력체제 강화를 통해 양질의 교원연수 제공
 - 안정적인 교원 연수운영 계획 및 연수 인프라를 갖춘 전문적인 기관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원 연수의 질 확보
 - 교원 연수기관에 대한 운영 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에 대한 적절한 환류를 통해 연수기관을 지속 점검·관리하고 연수 부실 운영 방지
- (교육정책 추진력 확보) 교원의 정책이해도 향상을 위한 연수 제공을 통해 국정과제 및 교육정책의 효과적인 추진 유도

⇒ 교원이 미래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직 전 생애단계에 걸쳐 역량 배양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교육 경쟁력 및 신뢰도 확보

Ⅱ. 교원연수 개요 및 현황

Ⅱ-1 교원연수 근거 및 유형

□ (주요 법적 근거) 「교육공무원법」 (§37, §38, §39, §40)

제37조(연수의 기회균등) 교육공무원에게는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제38조(연수와 교재비) ①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와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연수를 장려할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인 교육공무원의 연수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21.9.24. 개정)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라 교재비를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9조(연수기관의 설치) ① 교육공무원의 재교육과 연수를 위하여 연수기관을 둔다.

② 제1항의 연수기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특별연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령)

□ (교원연수 유형) 관련 법령에 따라 교원연수는 자격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로 분류

○ (자격연수) 법령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

※ 교(원)장 자격연수, 교(원)감 자격연수, 수석교사, 정교사 자격연수

○ (직무연수) 교육의 이론·방법 연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 교수학습·생활지도 및 상담·SW 관련 연수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 (특별연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연수계획에 따라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받는 연수

※ 학습연구년제, 대학원 학위과정, 장·단기 교육기관·연구기관 파견, 영어교사 심화연수 등

□ (운영 형태에 따른 연수 분류) 교원 연수는 연수 방식(연수 장소)에 따라 집합연수·원격교육연수(이하 원격연수)·혼합형(Blended)연수로 구분

【분류】 운영 형태에 따른 교원 연수 분류

구분	연수과정 의미
집합연수	연수기관(물리적 장소)에서 출석 수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연수
원격연수	방송·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연수
혼합형 연수	집합연수와 원격연수를 연계한 혼합형 연수

- (원격연수 개념) 원격연수는 물리적인 공간이 분리된 상황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수자, 학습자 및 전달 시스템 간 상호작용을 통해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으로 자유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연수를 의미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교육체제에 대비한 교원 역량 및 연수체계 방향 탐색(21, 전제상 외)에서 참조

- (법적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연수과정 등) ① 생략

② 연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원격교육 연수과정을 운영하려는 연수기관은 원격교육연수 계획서 및 원격교육연수 내용을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제7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는 중앙교육연수원과 교육감이 설치하는 원격교육연수원의 경우에는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원격연수 유형) 실시간 진행 여부·상호작용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원격교육연수의 재개념화 및 미래 방향(20, 전제상 외)



- ①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 실시간 비디오·오디오 회의 플랫폼(ZOOM 등) 등 쌍방향 화상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연수로, 교수자-학습자가 카메라, 오디오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과정
- ② (실시간 단방향 원격연수) 동영상 콘텐츠 호스팅 플랫폼(Youtube 등) 등을 활용하여 교수자가 실시간으로 학습자에게 일방향의 연수과정 및 내용 등을 제공하는 연수
- ③ (비실시간 단방향 원격연수) 멀티미디어 자료로 구성된 교수-학습 콘텐츠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연수로, 교수자가 일방향의 연수과정 및 내용 등을 제공하는 연수
- ④ (비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 교수자가 사전에 만들어진 콘텐츠를 학습자에게 제공함과(동영상 시청, LMS 등) 동시에 학습방에서 질문-답변 등을 통해 쌍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과정

< 주요 성과 >

- (자격연수 패러다임 전환) 경쟁 중심의 자격연수를 협력·성장의 장으로 전환하고, 교육자치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자격연수 체제 구축
 - 정교사(1급) 자격연수 평가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자격연수에 대한 과도한 경쟁 및 부담 완화(20.4.14)

【정교사(1급) 자격연수 평가방식 전환에 대한 연수생 현장 의견】

- (경북) 절대평가 전환되어 경쟁 및 부담 완화되었으며 주변 동료 교사들도 모두 만족
- (경기울곡) 상호 경쟁이 아닌 협력·소통하는 분임 실행학습 교육과정 편성으로 나눔과 실천을 통한 전문성 신장과 역량강화의 역할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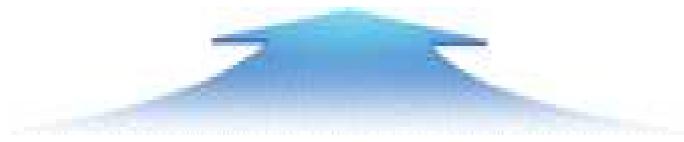
- 시·도교육감이 자격연수 세부 운영 방법 및 연수기관을 정하도록 하는 등 시·도교육청의 자격연수 운영 자율성 확대
 - ※ 2021년의 경우, 일부 시도(경기, 전북 등)가 교(원)장 자격연수를 자체 연수원에서 자율적 실시 - (경기) 경기도교육청—경기도 내 6개 연수원의 협업을 통해 '21년 교(원)장 자격연수 과정에서 경기도형 교(원)장 핵심 역량 교육과정 중점 운영
- (미래형 연수 지원) 교원 원격연수 이수 방법 및 콘텐츠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교원 연수 지원
 - 원격연수 콘텐츠 종합검색 기능을 통해 연수 접근성을 향상하고 콘텐츠 간 중복개발 방지로 풍부한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활용 도모
 - 콘텐츠 중심 원격연수를 탈피하고,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의 확대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원격연수 방법을 통한 연수의 질 제고
- (연수 안정성 강화) 노후화된 교원 연수시스템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연수 운영을 통해 교원 연수의 안정성 강화 및 신뢰성 확보
 - * (차세대 지능형 교육연수 플랫폼 구축 중) 학습자 맞춤형 학습 구현, 쌍방향 교육연수 체계 마련, 모바일 학습 환경 조성 및 학습 편의성 증대, 온라인 콘텐츠 제공 허브 구축 등

< 개선 방향 >

- (미래 연수체제 구축) 교육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교원의 역량을 도출하고 연수 모델을 개발하여, 장기적 관점의 연수체제 마련
 -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에듀테크 기반 연수 인프라 구축 제공
- (교원 연수 내실화) 개별 교원에 질 좋은 연수 과정이 적합한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연수기관, 연수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교원 연수 내실화 도모

Ⅲ. 비전 및 목표

비전	교원 연수체제 혁신을 통한 미래 공교육 선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교육체제에 적합한 교원 역량 강화 ◇ 교원 연수 내실화를 통한 사회적 신뢰 확보



	중점 추진방향	핵심 과제
연수 중점 과제	① 맞춤형 연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격별 핵심역량 지원 중심 자격연수 운영 ② 연수 대상자별 필요한 직무연수 지원 ③ 교원 생애단계별 연수체계 구축·운영
	② 미래형 연수 체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양한 연수방법·연수 경로 지원 ② 에듀테크 기반 인프라 조성 및 원격연수 다양화 ③ 미래교육체제 대비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
	③ 교원 연수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수기관 책무성 확보 ② 교원연수기관 협력체제 강화 ③ 교원 연수 사회적 신뢰 확보

IV. 교원 연수 중점 추진방향

1 맞춤형 연수 지원

① 자격별 핵심역량 지원 중심 자격연수 운영

- ◇ 교원 자격별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자격연수 내실화
- ◇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부합하는 자격연수 교육과정, 연수 방법 지원

□ (공통) 자격연수 반영 사항

- (연수 운영) 자격연수의 세부적인 운영 방법* 및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시도교육감이 정하여 자격연수 운영

* 법령 상 규정되어 있는 자격연수 내용(교육과정), 연수기간, 이수시간 등을 제외한 세부 운영 방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연수과정 등) ① 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별표 2와 같고, 자격연수별 세부 주제, 세부 주제별 이수시간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강의 운영방법 등 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21.1.6.>

- (교육과정)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되, 연수기관 자율 편성영역을 활용하여 교육현장의 요구 반영
※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교육부 고시)
- (교과목) 핵심역량 중심으로 교과목을 구성하되, 표준교육과정 상 필수과목 및 주요 교육정책(권장 사항) 관련 교과목을 반영하여 편성

【 자격연수 교육과정 내 필수/권장 교과목 】

필수 / 권장	내용	대 상	시 수
필수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공통	1시간 이상
	안전 교육	공통	5시간 이상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신규)	공통	1시간 이상
	장애인 학대·성범죄 예방 및 신고 의무 교육	공통	1시간 이상
	(디지털)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공통	자율 편성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역량 강화 교육	교장·교감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역량 강화 교육	교장·교감		
권장	인권교육	공통	자율 편성
	원격수업 역량 강화 교육	공통	
	양성평등·성인지 교육	공통	
	사회적경제 교육	교장	

- (연수 방법)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집합교육, 원격연수(콘텐츠 활용,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 등), 실행학습 등 다양한 연수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
※ 토론, 퍼실리테이터 활용 교육, 사례발표, 분임토의, 세미나 등 참여형 연수방법 활성화

□ 정교사(1급) 자격연수

- (기본 방향) 정교사(1급) 자격연수 평가 방식이 개선(‘20.4~)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운영 방식으로 자격연수 체제 전환

<p>【제도 개선】 정교사(1급) 자격연수 평가방식 개선 주요 내용</p> <p>① (절대평가 전환) 상대평가 점수를 부여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 - 연수생이 취득한 점수가 일정기준(60점)을 상회하면 자격연수를 수료하는 P/F방식으로 실시</p> <p>② (연수결과 관리) 자격연수 운영기관은 자격연수 결과 통보 시 개별 연수성적은 포함하지 않고 통보하되, 연수성적을 포함한 기록물은 ‘준영구’ 보관 → 정교사(1급) 자격연수 성적은 NIS에도 반영</p>
--

- (연수 개설) 정교사(1급) 자격연수의 효율적 운영 및 희소교과·특수교사 등 자격연수의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자격연수 통합개설 및 운영 검토

※ (기존) 표시과목별 연수과정 운영 → (통합 개설) 표시과목과 상관없이 통합하여 자격연수를 개설하여 공통과정을 운영하고, 표시교과 또는 특수교과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교육과정만 분반을 통해 운영

- (연수 운영) 정교사(1급) 자격연수의 평가방식 개선(상대평가→절대평가)에 맞는 연수 방법, 평가 방법, 연수생 관리 등에 대한 규정·매뉴얼 마련 및 적용

※ (연수 방법 예시) 분임학습, 실행학습, 연구활동 등 수행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 (연수생 관리 예시) 무단 결석·과제 미제출·분임활동 미참여 등 불성실하고 비협조적인 일부 연수생에 대한 패널티 강화 및 책무성 확보

- (교육과정) 단위학교의 수업활동·생활지도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교원으로서 필요한 핵심역량 함양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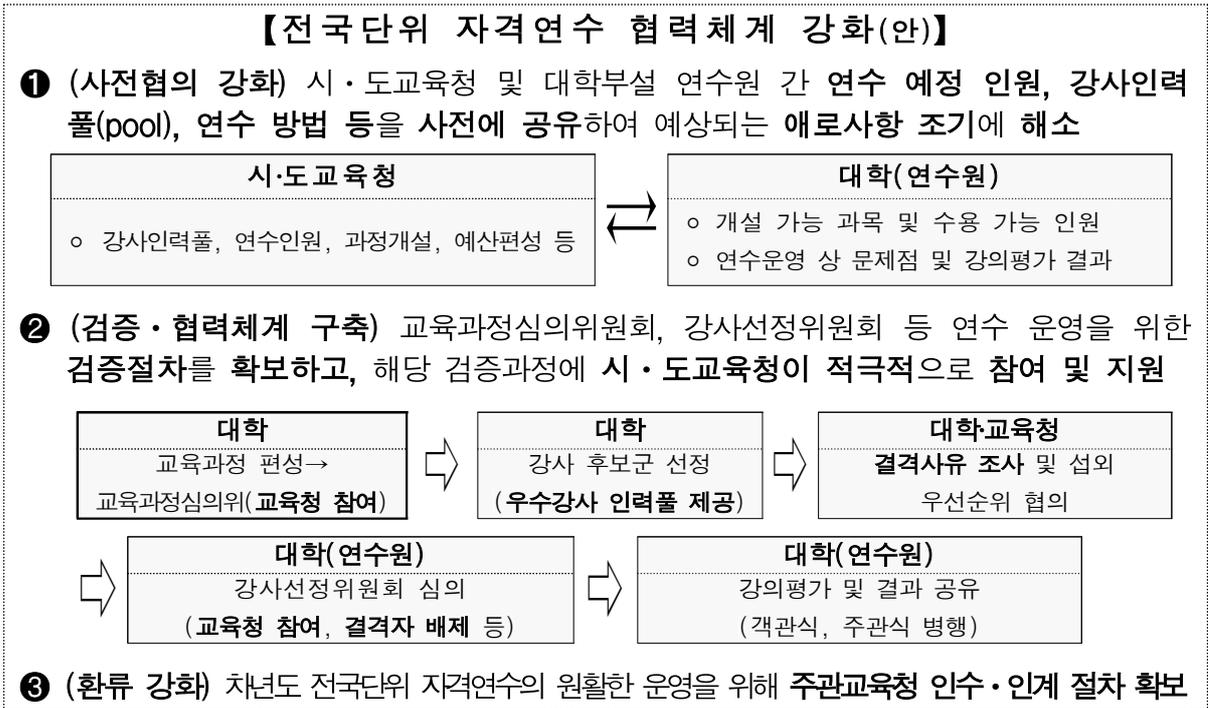
정교사 자격연수 핵심역량

- (성찰) 교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 및 자질을 이해하고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한 성찰 역량
- (리더십) 미래 사회 비전 및 국가 교육정책을 이해하고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 (수업)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수업을 개선하는 역량
- (생활 지도) 학생의 성장·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학교 생활 적응을 유도하고,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을 위하여 상담·지도하는 역량
- (교육공동체 참여) 민주적 학교공동체에 참여하고, 학부모 및 지역 사회와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는 역량

- (추가 반영 필요 교과목) 수업과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원으로서 필요한 핵심역량 외,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필요한 교과목(교육과정) 추가 반영

※ 원격수업 설계 및 콘텐츠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연수 등

- (협력체계 강화) 대학 등에 위탁하여 전국단위 자격연수 운영 시, 연수의 효율적 개설·운영을 위해 **주관교육청 - 시·도교육청 - 위탁연수원** 간 협력체계 강화



- (기간제교원 연수)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자격연수를 운영하되, '기간제교원'과 '기간제교원 외의 교원' 간 차별이 없도록 균형 있게 운영
 ※ (관련법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등
- (자격기준 강화) 교직에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강화 취지 및 관련 법령 시행 안내**
 ※ (관련법령)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등

□ 수석교사 자격연수

- (교육과정) 단위학교의 교수직 전문가로서 필요한 핵심역량 함양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수석교사 자격연수 핵심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찰) 수석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 및 자질을 이해하고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한 성찰 역량 · (리더십) 미래 사회 비전 및 국가 교육정책을 이해하고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 (교육 연구) 교수직 전문가로서 교육과정, 교수-학습, 학생지도, 장학 등에 관해 연구 개발하는 역량 · (수업 지원) 교사들의 수업 개선 활동에 대한 컨설팅 역량 · (생활지도 지원)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진로지도 활동에 대한 컨설팅 역량

- (추가 반영 필요 교과목) 교수직 전문가로서 필요한 핵심역량 외,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필요한 교과목(교육과정) 추가 반영**

※ 원격수업 역량 강화 연수, 젊은 세대 교원들과의 의사소통 및 공감대 형성 역량 교육 등

□ 교(원)감 자격연수

- (교육과정) 학교를 경영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과정·교과목 편성 및 운영

교(원)감 자격연수 핵심역량

- (성찰) 교(원)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 및 자질을 이해하고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한 성찰 역량
- (리더십) 국가 교육정책을 이해하고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리더십 배양
- (교무 운영) 학교장을 보좌하여 학교 업무를 운영하는 역량
- (교육 지원) 교내 장학 활동을 지원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역량
- (업무조정 및 갈등관리) 다양한 학내 조직을 관리하고,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량

- (추가 반영 필요 교과목) 학교경영자로서 필요한 핵심역량 외,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필요한 교과목(교육과정) 추가 반영

※ 민주적인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인식 제고, 의무교육단계 미취학·장기결석 학생 관리 교육 등

□ 교(원)장 자격연수

- (교육과정) 단위학교의 최고경영자로서 필요한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원)장 자격연수 핵심역량

- (성찰) 교(원)장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 및 자질을 이해하고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한 성찰 역량
- (리더십) 국가 교육정책을 이해하고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리더십 배양
- (교육 기획) 교육 혁신 전략 및 성과 관리 등 학교교육 기획 역량 강화
- (조직·인사관리)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학내 제반 상황과 분쟁·조정 해결하는 역량 배양
- (학교 경영) 재무·회계 등 행정관리 역량제고와 교원·학생·학부모·지역사회 협력·갈등조정 등 학교경영 능력 배양

- (추가 반영 필요 교과목) 단위학교 경영자로서 필요한 핵심역량 외,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필요한 교과목(교육과정) 추가 반영

※ 민주적인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인식 제고, 의무교육단계 미취학·장기결석 학생 관리 교육 등

- (연수기관 지정) 교(원)장 자격연수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교육청의 여건·특색에 맞게 교장자격 연수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 지정 가능 범위: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의 1,2,3호에 해당하는 연수원으로 한정 (단, 4호에 해당하는 연수원의 운영 과정의 경우, 해당 연수원과의 협의를 통해 활용 가능)

※ 권역별·지역별 협력하여 공동으로 교(원)장 자격연수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가능

② 연수 대상자별 필요한 직무연수 지원

- ◇ 교원의 특성(직위, 학교급, 공·사립 등)에 따라 필요한 직무 관련 역량 지원
- ◇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따라 필요한 직무연수 과정 도출·운영

□ (공통) 법정 의무 교육

- (현황) 개별 법령의 교원 대상 실시 필요교육 규정 → 구체적인 내용 【붙임】 참조

교육명	법률 근거(약칭)	연간 시수
안전 교육	학교안전법 제8조	3년 마다 15시간 이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장애인복지법 제25조	1회 이상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교육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26조	1시간 이상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법 15조	학기별 1회 이상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폭력방지법 제5조, 성매매 피해자보호법 제4조,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	1회(1시간이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학교보건법 제9조의2	3시간 이상(실습2시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	청탁금지법 제19조,	1회 이상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1회(1시간) 이상
부패방지교육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1회 이상(2시간 이상)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5조	규정 없음
인성교육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1시간 이상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	공교육정상화법 제5조	규정없음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1회 이상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초·중등교육법 제28조	규정없음
장애인학대·성범죄 예방 및 신고 의무 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1시간 이상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	정보공개법 제6조제5항	1회 이상

- (운영 방법) 직무연수로 개설·운영 및 직무연수 실적 부여 가능
 -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에서 개설 시 직무연수 실적 부여 가능
 - 직무연수 개설 시, 교원 연수 관련 법령 및 연수원 규정·지침 등을 준수
 - 개별 법령에서 구체적인 연수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원격연수 콘텐츠를 활용하여 연수 운영 가능
 - 소관부처의 법정 의무교육 이수실적 인정 기준에 따라 직무연수 실적 부여 가능

□ 학교관리자 대상 직무연수

- (연수 목적) 학교관리자의 단위학교 경영 등과 관련된 역량 신장 지속 지원
 - ※ 특히, 신규 임용된 교(원)장 및 교(원)감의 단위학교 문제해결 역량 강화 지원
- (연수 내용)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및 학교 경영 능력 향상 과정, 성 비위 근절·예방, 학교 내 수업 질 제고를 위한 관리자 교육 등 운영
 - ※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학교 경영) 학교 갈등 관리 사례와 해결, 학교공동체 조직관리 등
 - ※ (성 비위 근절·예방) 학교에서 발생 가능한 성비위 유형별 사례중심 교육, 관련 법령 교육 등
 - ※ (학교 내 수업 질 제고) 학습공동체의 원활한 운영 지원, 교원 자율연수 활성화 방안 등
- (연수 방법) 단위학교에서 문제 발생 시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문제해결(PBL) 기반의 연수과정 운영

□ 신규교사 대상 직무연수

- (연수 목적) 임용 전·후 저경력 교원의 교직 적응 지원 및 필요한 역량·가치 함양
- (연수 내용) 수업·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학급경영 등 신규교원으로서 필요한 역량 및 가치를 중심으로 연수과정 운영
 - ※ 신규교사 필요 역량 예시(16, 김희규) : (초등)생활지도·심리상담 / (중등)진로지도·학급경영 등
- (연수 방법) 시·도교육청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신규교사에 대한 연수 실시
 - ※ (임용 전) 신규교사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에 대해 학교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연수과정 중심 운영
 - ※ (임용 후) 전담 멘토링 제공, 전문적 학습공동체 연수과정 운영 등 맞춤형 연수 지원

【사례】 임용 전·후 저경력 교원 대상 연수 과정 운영

- (대전)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 - 신규교사 추수연수
 - (구성) 초등(특수)/중등별 특성 및 임용 전 연수와 임용 후 추수 연수의 연계성 고려
 - (내용) 온라인 수업 디자인, 신규교사 이미지 메이킹, 영화로 이해하는 학생·학부모와의 의사소통 기술, 멘토교사와 함께하는 학급경영 레시피 등 교직 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 위주 진행

※ '23년 사도교육청 평가지표 변경 예정 안내

- 평가지표 1-4. 교원 전문성 신장 평가지표 중 **임용예정자(신규교사) 대상 연수 실적의 달성 기준**을 현재 기준(50시간 이상)에서 **확대*하여 변경 예정**이니 '22년 연수 계획 수립 시 참고 바람
 - * 달성 기준 시간 확대(예: 50→60시간) 또는 연수 시간 증가율(예: 작년 실적에 비해 10% 이상 증가)

□ 복직예정자 대상 직무연수

- (법적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3항
- (연수 목적) 복직 교원의 학교환경 및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지원
- (연수 대상) 연속 2년 이상 휴직(육아, 해외동반)한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
 - ※ 휴직기간 2년 미만자도 업무공백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 자체 기준에 따라 연수 대상자 선정 가능
- (연수 시기) 복직예정일 이전에 실시(정기인사 고려 1~2월 또는 7~8월)
 - ※ 불가피한 사정으로 복직예정일 전 연수를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복직 후 1년 내에 연수 이수
- (연수 내용 및 방법)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학생지도 등의 직무 관련 내용 및 주요 교육정책·교육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하되, 연수 방법은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연수 운영
 - * (예시) 원격수업 설계 및 콘텐츠 활용 역량 연수, 디지털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
 - ※ 30시간 내외로 연수시간 편성, 교육과정의 특성에 맞는 방법(집합·원격·혼합연수)으로 운영

③ 교원 생애단계별 연수체계 구축·운영

- ◇ 교원 생애단계 구분 및 생애단계별 필요한 핵심역량 도출·제시
- ◇ 교원 생애단계별 직무연수 로드맵 마련 및 맞춤형 연수과정 운영

□ 미래 지능정보사회 교원 핵심역량(예시)

- (교원의 역할) 지능정보사회에서 교원은 단순 지식전달자가 아닌 **교육과정·수업 전문가**, **생활·진로지도 전문가**, **학교공동체 구성원**, **자기개발자**로서 역할이 요구됨
- (역할별 핵심역량) 지능정보사회에서 교원에게 요구되는 역할 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도출하고, 핵심역량과 관련된 **기능·태도**를 역량요소로 제시

필요 역할	핵심역량	역량요소	
교육과정·수업 전문가	교육과정 역량	기능	①학생 진단 및 요구 분석 ②교육 상황 파악, ③교육과정 문해력 ④교육과정 재구성 ⑤창의적 교수·학습 설계
		태도	①재구성을 위한 합리성 ②타교과/타학급 교원과의 협력적 태도 ③교육과정 재구성자로서 성실한 자세
	수업 역량	기능	①창의적 교수·학습 구현 ②학생 맞춤형 수업 운영 ③교수·학습 자료와 평가도구 개발 ④교수·학습 실천 ⑤평가결과 분석 및 피드백
		태도	① 학습자에 대한 관심과 존중 ② 학생 학습에 대한 책무성 ③수업 실천에 있어서의 자신감 ④ 수업 진행과 평가에 있어서의 공정성
생활·진로지도 전문가	생활지도 역량	기능	①학생의 지속적 관찰 및 기록 ②학생 및 학부모와 효과적인 의사소통 ③상담기술 적용 ④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 지도 ⑤학생의 원만한 교우관계 지도 ⑥문제상황 대처
		태도	①학생에 대한 애정과 존중 ②학생변화에 대한 인내심 ③학생 상황에 대한 공감 ④학생 지도의 일관성과 공정성
	진로지도 역량	기능	①학생의 진로 적성 관련 정보 수집과 기록 ②진로상담 능력 ③학생, 학부모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④진로상담기술 적용
		태도	①학생의 적성과 진로 희망에 대한 관심과 존중 ②상담자로서 성실한 자세
학교공동체 구성원	학교·학급 경영 역량	기능	①민주적 학교/학급 경영 ②협력적 학교/학급 조성 및 경영 ③창의적 경영 능력과 리더십 ④동료교원·학부모·지역사회와의 의사소통과 협동
		태도	①학교와 학급에 대한 책임감 ②민주적·협력적 태도 ③학교/학급 운영에의 공정과 참여
	교직 실무 역량	기능	①창의적 기획력과 추진력 ②교내외 업무처리 ③문서 작성 및 관리 능력 ④행정업무시스템 활용 능력 ⑤업무 관련자 간 소통과 갈등 관리
		태도	①업무처리에 대한 책임감과 청렴 ②협력적 태도 ③정확성과 성실성
자기개발자	변화 대응 역량	기능	①과학기술 매체의 수업 적용(에듀테크) ②학습자의 문화적 다양성 대처 ③외국어 활용 ④각종 위기와 재난 대응 ⑤창의적 사고와 기법 발휘
		태도	①각종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 ②적극적 대응자세와 도전 정신 ③다양성에 대한 관용 ④인성, 감성, 공감
	교직 관리 역량	기능	①교직 윤리 이행 능력 ②직무 수행에 대한 자기반성 능력 ③전문성 개발을 위한 학습력 ④학습 공동체 참여와 협동력
		태도	①교직 자긍심과 사명감 ②지속적 자기 개발에의 책임감 ③학습 공동체 내 협력적 학습 태도
	자기 관리 역량	기능	①자기 관리를 위한 성찰 능력 ②자기 관리를 위한 학습 능력 ③감정과 스트레스 관리 ④신체 건강 유지와 직업병 예방 능력
		태도	①자기 개발 의지 ②교양 있고 건강한 삶에 대한 지향성

※ 교원의 핵심역량 배양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 개발('18, 흥후조 외)

□ 생애단계별 교원 핵심역량(예시)

-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교원의 핵심역량을 교직 경력에 따라 구체화, 생애단계별 필요한 핵심역량의 우선순위를 도출

※ 시·도교육청별 여건 및 특색에 따라, 생애단계별 교원 핵심역량에 대한 별도의 모델 적용 가능

【예시】 생애 단계별 교원 핵심역량

※ 지능정보사회 대비 교원의 핵심역량 도출 및 교원연수 분류체계 개발('17, 홍후조 외)



- ① (수업 역량) 수업과 평가에 관한 지식과 학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수·학습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교육목표 달성에의 책무를 다하는 능력
- ② (교육과정 역량) 교육과정 문해력과 교과 내용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의 수준과 요구 및 교육 상황에 적합하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창의적으로 교수·학습을 설계하는 능력
- ③ (생활지도 역량) 생활지도 및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 학생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학생의 상황에 공감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 및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능력
- ④ (진로지도 역량) 미래사회 변화를 이해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 학업과 직업에 관한 장래 희망을 파악하여 적절한 정보 제공과 상담을 통해 학생의 진로를 안내할 수 있는 능력
- ⑤ (학교·학급 경영 역량) 학교와 학급 경영에 대한 지식과 전략, 책임감과 소통능력을 갖고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학교·학급을 민주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하는 능력
- ⑥ (변화대응 역량) 국가 및 국제 사회, 교육 정책 및 환경, 학생과 학부모, 과학기술 등의 변화와 발달에 따라 그 변화 방향을 이해하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력
- ⑦ (자기관리 역량)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교양적 지식과 기능의 학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관리하여 교원으로서의 품위 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평생학습자로서의 능력

□ 생애단계별 직무연수과정 운영

- (기본 방향) 교원의 입직부터 퇴직까지 생애단계별로 도출된 교원 핵심역량 및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여 교육현장 이해 및 적응도 제고
- (연수 운영) 시·도교육청별 (가칭) 교원 생애단계별 직무연수 로드맵을 구축하여 연수 프로그램 특성화 및 맞춤형 연수과정 운영

※ 로드맵 구축 시 개별 교사의 요구 및 필요도를 고려하여 맞춤형 연수 지원

【사례】 생애 단계별 역량을 고려한 연수 과정 운영

- (서울) 교직단계별로 구분한 연수 과정 운영
 - ① 초등 교직단계별(10~20년 / 20~30년) 직무연수
 - (특징) 교직생애주기(10~20년 / 20~30년) 맞춤형 교수역량, 관계역량, 변화대응역량, 자기 관리역량 등에서 전문가로서의 성장 및 교직생애 성찰 기회 제공
 - ② 유초등 퇴직예정교원 '50+ 인생을 설계하다' 직무연수
 - (특징) 퇴직 후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및 미래 설계를 위한 다양한 정보 등 은퇴와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

2 미래형 연수 체제 강화

① 다양한 연수 방법·연수 경로 지원

- ◇ 수요자 요구·참여 중심 연수 방법 확대를 통한 연수 효과 제고
- ◇ 새로운 연수영역 발굴·지원을 통한 연수 경로 다양화

□ 공급자(연수기관) 중심 연수 탈피, 수요자 중심 연수 확대

- (전문적 학습공동체) 학교별·주제별로 조직된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직무연수로 인정하여 교원 전문성 향상 및 협력적 교육문화 형성

【사례】 학교별·주제별 전문적 학습공동체 연수

- (서울) 초등 THE(더) 전문가 직무연수
 - (주제별 심화 연수) 생태전환교육, 시교육, 세계시민교육 등 주제별로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자율적인 토론·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신장하고 해당 분야의 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 (울산) 학교·지역 단위로 조직된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학교 단위로 교내 교육력 향상 관련 주제를 선정해 공동 연구·실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교육연수원과 연계할 경우 직무연수 실적으로 인정
 - (학교 밖 교사 네트워크) 학교 구분 없이 특정 주제로 모인 교원 공동체 대상으로 연수 운영을 지원하고 통합교육연수시스템 등록 등을 통해 직무연수 실적으로 인정
- (현장 기획 연수) 단위학교 교원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수요자 참여형 연수, 찾아가는 연수·학교 요청 연수 등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연수과정 지원

【사례】 수요자 참여형 현장 기획 연수

- (부산) 교원의 자율적 성장을 위한 공모형 연수 실시
 - 학교가 연수운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하면 공모 절차를 통해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교육연수원 소속 담당연구사의 1:1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연수과정 설계 컨설팅, 강사비 지급, 직무연수 처리 등 지원

□ 새로운 연수영역 발굴·지원

- (K-MOOC 연계) K-MOOC 강좌 중 교육·예술·인문·사회경제 등 직무관련성이 높고 교원에게 필요한 강의 콘텐츠를 엄선하여 제공하고, 이를 직무연수 이수 실적으로 인정

※ ('20.상) 11개 과정 → ('20.하) 14개 과정 → ('21.상) 17개 과정 : 구체적인 내용 **【붙임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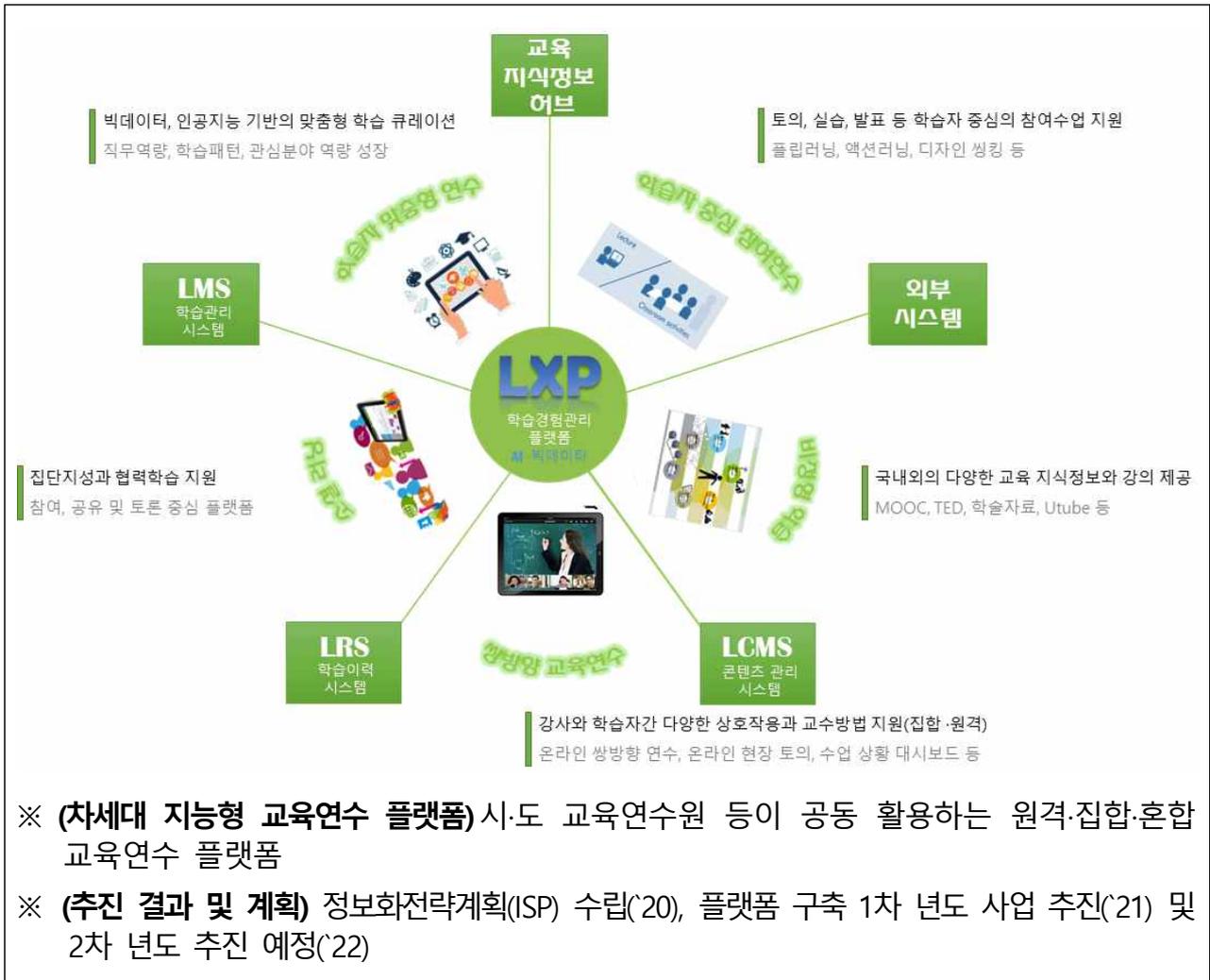
【참고】 K-MOOC 교원 연수 활용

- (K-MOOC 정의) 수강인원에 제한 없이(Massive),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하며(Open), 웹 기반으로(Online) 미리 정의된 학습목표를 위해 구성된 강좌(Course)
- (연수 지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특수 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경기도 교육청 협조), 중앙교육연수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협업을 통한 사이트 진입, 연수실적 인정 시스템 안정화
 - ※ (이수 인정) 지정된 K-MOOC 강의를 수강한 경우 직무연수 이수 실적으로 인정(학습인정 시간은 예고된 시간 인정)
 - ※ (이수증 발급) 이수증 발급 메뉴 선택 → 이수증 열람 후 발급

② 에듀테크 기반 인프라 조성 및 원격연수 다양화

- ◇ 에듀테크 기반 교원 연수 인프라 조성·지원
- ◇ 원격연수 콘텐츠 품질 관리 강화 및 운영 방법 다양화를 통한 연수 질 확보

□ 차세대 지능형 교육연수 플랫폼 구축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학습자 주도 맞춤형 학습 구현
-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쌍방향 교육연수 체계 마련
- 모바일 학습 환경 조성 및 학습(관리) 편의성 제고
- 교육 분야 지식정보 및 맞춤형 콘텐츠 제공 온라인 허브 구축
-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연수 관리 체계 지원

□ 원격연수 콘텐츠 종합검색 DB(중복방지시스템) 운영

- (중복방지) 원격연수 콘텐츠 종합검색 DB 구축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격연수 콘텐츠 중복개발 사전 방지 및 콘텐츠 품질 향상 기반 조성

※ 이수자 정보관리 시스템 등록 콘텐츠 및 통합교육연수시스템에 등록하는 원격연수 콘텐츠 일괄 DB화

※ (시스템 활용)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전 해당 시스템 검색을 통해 신규 개발 예정 콘텐츠와 타 연수기관에서 운영 중인 연수 콘텐츠와의 중복성 여부 검토 등

- (연수 편의성 제고) 원격연수 콘텐츠 종합검색 포털 서비스(<https://tc.edunet.net>)를 제공하여 교원의 연수 접근 편의성 향상

□ 원격연수 콘텐츠 품질 관리 지속 강화

- (내용심사 개선) 연수내용 위주의 지표로 심사기준 개선·완화*하되, 콘텐츠 관련 문제 발생 시 연수원(또는 콘텐츠 개발기관) 책임 범위의 확대·강화** 방안 검토

* (현재) 연수구성 연수내용 기타 요건 등 19개 지표 → (개선) 연수내용 위주의 5개 ~ 10개 지표로 완화

** 원격교육연수원 운영 평가 지표와 연계하여, 미흡 연수원에 대한 관리·컨설팅 확대 등 교원 연수의 내실화 도모 및 원격교육연수원의 책무성 강화

- (갱신인증제 활용) 유효기간(3년)이 경과한 원격연수 콘텐츠라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기간을 연장(2년)하여 사용 가능

※ (갱신 조건) 연수내용을 현행화하는 등 콘텐츠 정합성을 갖추고 내용심사에 합격하는 경우

□ 원격연수 운영 방법 다양화

- (실시간 쌍방향 연수과정) 원격교육연수원 연수과정 시범운영(21.12예정) 및 내용심사 매뉴얼* 개선하여 실시간 쌍방향 연수 확대

* 실시간 쌍방향 연수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콘텐츠 내용심사 매뉴얼과 차별화 예정 (운영인력 확보 여부, 원활한 연수 운영에 필요한 하드소프트웨어 구비 여부, 토론실습 등의 교수 학습활동 포함 여부 등)

- (마이크로러닝) 중앙교육연수원 마이크로러닝* 시범운영(21.4~) 및 운영결과 바탕으로 마이크로러닝 연수 과정 확대 도입 검토

* 차시, 총괄평가 문항 등으로 구성된 정형 콘텐츠 외에 5~10분 내외의 동영상 콘텐츠

※ 콘텐츠 제작 및 활용을 통해 교육 학습자들의 요구에 적합한 실용적인 연수 지원

③ 미래교육체제 대비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교원이 디지털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

□ 연수지원 방향

【참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환경 변화

- (수업 형태) 오프라인(등교) 기반 수업 위주에서 오프라인·온라인(원격) 수업의 적절한 병행을 통해 학생 맞춤형 수업 강화
- (수업 공간) 학교 외 가정·지역사회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개방
- (수업 방식) 지식 전달을 위한 단방향 위주의 수업에서, 교원-학생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쌍방향 수업 확대

- (교육환경 변화 대응) 원격수업 전면 도입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원에게 새로이 요구되는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 ※ (기본) 스마트 기기활용 원격수업 교수-학습 방법, 원격 소통 역량, 디지털 윤리 등
- (전교원 대상 지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래에 따라, 모든 교원에게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필요
 - ※ 기존의 경우, 정보교과 관련 교원을 중심으로 디지털 관련 역량 연수 제공 및 지원

□ 연수운영 방안(예시)

- (연수 과정) 모든 교원이 스마트 기기활용, 원격 수업 설계 등 각종 디지털 역량을 체화할 수 있도록 연수과정 구성 및 운영

【예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관련 교육과정

교육과정
① 원격수업 설계 및 콘텐츠 활용 역량 강화
② 스마트 기기, 플랫폼 등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③ 디지털 윤리 함양 교육(초상권,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등)
④ 디지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⑤ 온라인 학습 격차 및 학습 부진 대응역량 강화

- (연수 방법) 수준·과목 등에 맞게 연수과정을 구성하여 맞춤형 연수 운영

수준별 연수 내용(예)	과목별 연수 내용(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기자재 활용법, 저작권법의 이해 등 ○ (심화) 콘텐츠 제작법, 온오프라인 융합 수업 방법, 온라인 학습격차 및 학습 부진 대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 컴퓨팅 기반 그림그리기, 온라인 미술관을 통한 작품 감상 교수법 ○ (과학) 온라인 환경 속 실험 방법

【사례】 초·중등 원격수업 역량강화 연수

- (인천) 초·중등 특성을 반영한 원격수업 역량강화 연수
 - (초등)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 사례 등을 포함하여 디지털리터러시, 교과연수 수업 설계 및 놀이 활동 등 학생참여형 블렌디드(혼합) 수업 방안 연수 실시
 - (중등) 원격수업 도구 활용법을 포함하여, 교과별로 원격수업을 고려해 '교육과정 재구성-학생 중심 수업 운영-과정 중심 평가'를 연계할 수 있도록 연수 과정 구성

3 교원 연수 내실화

① 연수기관 책무성 확보

- ◇ 안정적이고 우수한 기관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 연수 부실 운영 방지
- ◇ 연수기관 운영 평가 실시 및 결과 환류를 통한 연수기관 지속 점검·관리

□ 연수기관 지정 내실화

- (연수원 인가) 시설·설비, 전담인력, 운영 예산 등 연수원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에 대한 엄밀한 심사를 통해 연수 운영의 최소한의 질을 확보하고
 - 운영 기획, 연수 운영, 연수 지원, 연수 접근성 등 우수한 운영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을 연수원으로 인가하여 교원 연수의 질 제고
 - ※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한 운영 준비도를 심사에 반영예시: 실시간 쌍방향 연수 실시 인프라 구축 여부 등
-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교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연수과정 중, 연수원이 실시할 수 없는 특수한 분야로 한정하여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 연수목적·활동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단순 취미 활동, 외유성 연수 방지
 - ※ 골프, 바리스타 등 취미 활동이나 단순 체험활동 등 오락 요소 위주의 연수과정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연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
 - ※ 국외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연수의 경우에는 연수 내용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엄정한 심사 필요
 - 해당 연수과정 운영 후, 연수 만족도·민원 발생 여부·연수 지속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후 연수기관 재지정 및 운영 여부 판단
 - ※ 필요한 경우, 문제 발생 특수분야 연수기관 등에 대한 리스트 작성 및 시도교육청 간 정보 공유

□ 연수 운영과정 책무성 강화

- (강사 활용 내실화) 연수과정 및 내용에 대한 현장 전문가를 강사로 섭외하고, 교원 연수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 연수 중 문제 발생을 예방 및 연수 종료 후 연수자의 만족도 결과 공유 등을 통해 피드백 제공
 - ※ 사전 검증 없이 특정 기관·대학 등의 관계자가 관행적으로 강사로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
 - * 성적 수치심 유발 정치·종교 편향 발언 등 연수생에게 불쾌감·혐오를 유발하지 않도록 신중한 언행 유지

- (연수 과정 관리) 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연수과정의 내용과 운영에 대한 연수자 피드백 활용 및 지속적 관리를 통해 연수 내용적합성 유지
 - ※ (통합교육연수시스템 개선) 동시 접속 차단 및 일일 최대학습 차시 제한 설정(15차시)로 학습 효과 제고, 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및 민원 접수 사항 지속적 점검조치 등(21.6)
- (연수 접근성 보장) 연수생이 연수기관에서 연수 과정을 이수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접근성(물리적, 웹 접근성 등)*을 보장
 - * 향후 연수원 평가에 있어 연수 접근성 보장 내용을 반영한 지표 마련 예정(21.12~)
 - ※ 장애인 교원의 연수 기회 제고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연수접근성 보장(교육공무원법 제38조제3항 개정 관련)

□ 연수기관 운영 평가·결과 환류

- (운영 평가) 교원 연수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연수과정·운영 질 제고

【현황】 교원 연수기관 운영 평가 현황		
구 분	연수 기관 (연수원 수 : '21.9 기준)	평가 주기
원격교육연수원	한국교원캠퍼스 원격교육연수원 등 29개 ※ 운영 주체(공공, 대학부설/민간)에 따라 격년제 평가	2년
종합교육연수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종합교육연수원 등 16개	3년

※ (21년) 민간 원격교육연수원 및 종합교육연수원 대상 평가 실시
(22년) 공공, 대학부설 원격교육연수원 평가 실시 예정

- (결과 환류) 교원 연수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기관에는 역량 강화 지원·운영 제재 부과 등 병행
 -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평가 기준 결과 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예정(22~)
 -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1]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의 세부 기준 구체화 「원격교육연수원 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적용 대상 확대(종합교육연수원 등)하여 연수원 간 형평성 확보 등

② 교원연수기관 협력체제 강화

- ◇ 중앙· 시도 간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교원연수 혁신
- ◇ 교육 분야를 넘어 타 분야의 우수한 연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 활용·제공



□ 중앙· 시도 간 교류·협력 강화

- **(협의체 운영)** 연수원 간 상호 지원·협조체계 강화·교원연수 발전 방안 모색 등을 위한 각종 협의체 구성·운영
 - ※ 전국교육연수원장 협의회, 전국교육연수원 발전협의회, 통합교육연수시스템 공동 추진 협의회 등
- **(교류 활성화)** 우수강사 풀(pool)·연수 운영 우수 사례·연수 프로그램 자료 등 중앙· 시도 간 교류 활성화
 - ※ (중점 사항)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연수 혁신 시·도교육연수원 혁신적 연수 운영 사례 등
- **(원격연수 공동 개발·활용)** 전국 공통으로 필요한 원격연수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통합교육연수시스템을 통한 공동 활용으로 중복개발 방지 및 비용 효율성 제고
 - ※ 교육부 주관 국가교육정책분야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21년 31종 예정), 시·도 공동 개발 원격연수 콘텐츠 공동 활용('20년 개발 483종)

□ 각종 연수기관 간 교류·협력 활성화

- **(교육분야)** 각종 교육분야 연수원이 참여하는 연수프로그램 성과 공유회, 연수교류 프로그램·위탁사업 발굴 등의 상생방안 모색
 - ※ 대학부설 교육연수원, 종합교육연수원, 원격교육연수원, 특수분야 연수기관 등 각종 연수기관
 - ※ 세계 각국 연수기관과의 국제적 교류를 통한 교육 분야의 국제적 안목 향상
- **(교육분야 외)** 정부부처 및 외부기관*의 우수 연수 콘텐츠 확보 및 공동 활용 추진
 - * 국가인재개발원, 청렴연수원 등 우수콘텐츠 선별하여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서비스 가능하도록 지속 협의

③ 교원 연수 사회적 신뢰 확보

- ◇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근무지외 연수 및 국외연수 승인·관리·감독 강화
- ◇ 교원 연수환경 변화 적응 지원을 통한 합목적적 연수 이수 지원

□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운영 내실화

【개요】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이하 근무지외 연수)

- (법적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1조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의3
- (입법 취지) '근무지외 연수'는 휴업일(방학 등)을 활용하여 지난 교육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등, 교원이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심도 있고 다양한 연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수 장소의 제한을 열어주는 데 목적이 있음
- ※ 연수 목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하며, 입법 취지와 다르게 단축근무·조기퇴근·휴가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없음

- (연수 승인) 소속기관의 장(학교의 경우 학교장)은 연수의 질 관리 등의 책무성에 따라 입법취지에 위배되지 않고,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수 승인
- ※ 연수 목적, 연수의 적합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 (연수 관리) 학교장은 승인한 연수에 대하여 연수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치하고, 방학 중 학생의 학습권 침해 및 학교운영 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교원의 국외연수 관리·감독 강화

- (계획 단계) 국외연수 계획 수립단계부터 방문국가·기관, 방문일정 등 연수·출장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엄격한 사전 검토 실시
- ※ (서울특별시조례 참고) 공무국외여행 계획 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및 결과 보고 포함
- (심사 단계) 공무국외여행 규정과 심사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하고, 일정·여행경비 등 집중 검토하여 내용 및 예산 지원 타당성 심사 강화
- (실시 단계) 당초 허가받은 계획대로 운영되도록 상시 점검하고, 변경사항·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안내
- (사후 관리) 결과보고 이후 예산낭비여부·공무 연관성·효과성·필요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후 점검(모니터링)하고, 이를 다음 연도 계획에 환류

□ 교원의 연수환경 변화 적응 지원

- 교원이 연수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연수 형태에 충분히 적응하여 연수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시스템 모니터링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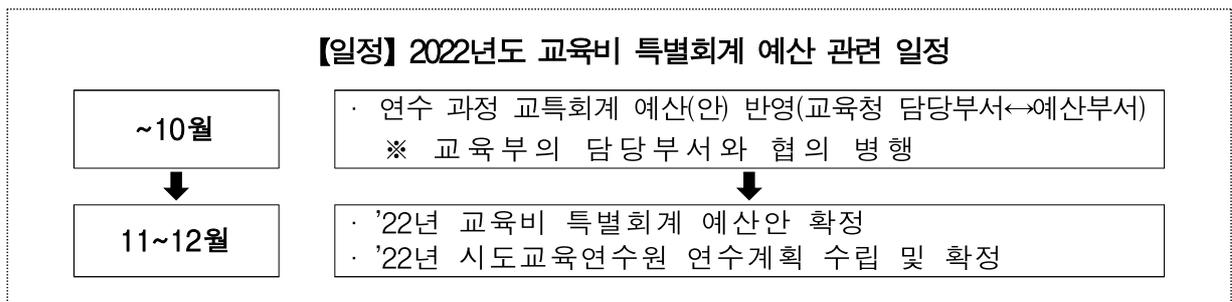
【예시】 연수 형태에 따른 안내 내용

-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 실시간 참여(댓글, 발표 등) 및 온라인 토론·실습 등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에서 요구되는 교수 학습활동에 적극적 참여 독려, 필요한 장비(카메라, 오디오 등) 안내 등
- (원격연수 상시학습)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수 가능, 한번 이수한 연수과정이라도 '복습' 기능을 통해 원하는 만큼 부족한 부분 보완 가능 안내 등
- (교원 지식공유 플랫폼) 교원 간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구성하여 실시간 공유 가능 안내 등
- (CBT 방식 집합고사) 최신 에듀테크 기능 활용한 집합고사의 디지털화 및 참여 독려 등

V. 행정사항 및 협조 요청사항

1. 연수비 지원

- (연수비 지원) 교원 1인당 연수경비 예산 지원 단계적 확대 추진
 - 「교원연수 선진화 방안」(11.12)에 따라 '직무연수 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 ※ (16 국정감사 시정요구 사항) 단위학교 연수비가 교원역량강화를 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교원 1인당 25만원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 연수경비는 교과교육, 생활지도·상담 등 교원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 한정하여 지원, 직무 수행과 관련성이 적은 경우에는 지원 제한
 - ※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격증 취득 등 교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연수
- (예산 반영) 202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반영 협조
 - 주요정책과제 추진과 관련된 연수* 및 자격연수(기간제 교원 포함) 등에 소요되는 예산 반영에 적극 협조
 - * **【별첨】** 2022년도 교원 연수 과정 편성 시 반영 요청 사항 참조



2. 교원 연수 이수 실적 인정 기준

- (중복 판단) 단순 연수과정명·프로그램 목차 등이 아닌, 구체적인 연수 내용의 차별성에 따라 판단
 - ※ 연수과정 간 구체적인 연수내용의 **70% 이상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입증 필요
- (입증 책임) 연수과정의 중복여부에 대한 입증은 연수생의 책임 사항
- (이수 인정) 동일·유사과정 등 중복되는 연수과정의 경우, 중복되는 연수과정 중 1개의 연수과정에 대해서만 이수 실적 인정

3. 연수 기회 보장

- 기간제교원·정규교원 간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연수 기회 제공
- 사립학교 교원에 국·공립 교원과 동등한 수준의 연수기회 제공
※ 사립학교법 개정 내용(18.4) 반영 → 사립학교 교원의 연수 실시 독려·연수실적 인사관리 반영 등
- 장애인 교원의 연수기회 제고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연수접근성 개선

【「교육공무원법」 제38조제3항 개정사항 안내】

제38조(연수와 교재비)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인 교육공무원의 연수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시도교육연수원 현황(19개 기관)

순	연수원명	설립일	소재지	전화번호
1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75.4.30.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248	02-3019-8000
2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	'87.4.8.	부산 연제구 토곡로 66	051-760-5600
3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91.7.1.	대구 달서구 당산로 121	053-231-1045
4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96.6.18.	인천 중구 영종대로 277번길 74-60	032-745-0128
5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91.7.1.	광주 북구 능안로 30번길 5	062-600-7713
6	대전교육연수원	'93.11.10.	충남 공주시 반포면 가마봉길 100	041-851-3503
7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98.12.4.	울산 동구 등대로 110	052-703-3311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15.1.1.	세종 조치원읍 내창천로 48 ※교육원에 교원연수기능 부여	044-902-1322
9	경기도울곡교육연수원	'86.11.19.	경기 파주시 법원읍 자운서원로 184	031-950-0034
10	경기도교육연수원	'12.9.1.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경충대로 168번길	031-644-9800
11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19.9.1.	경기 안양시 만안구 능곡로 84	070-4796-7740
12	강원도교육연수원	'90.1.25.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587번길 42	033-640-9500
13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87.4.1.	충북 청원군 가덕면 교육원로 153-100	043-299-6300
14	충청남도교육연수원	'90.6.30.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88-25	041-851-6176
15	전라북도교육연수원	'87.4.10.	전북 익산시 금마면 용순신기길 48-69	063-830-8114
16	전라남도교육연수원	'87.10.13.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지석길 19	061-380-7700
17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88.12.12.	경북 구미시 금오산로 198-10	054-450-4301
18	경상남도교육연수원	'88.7.2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111번길 22	055-279-9001
19	제주특별자치도탐라교육원	'86.4.21.	제주 제주시 산록북로 429	064-710-0500

2. 교육행정연수원(1개 기관) 및 종합교육연수원 현황(16개 기관) 현황

순	인가번호	연 수 원 명	인가일	비고
1		서울대학교사범대학 부설 교육행정연수원	'64.2.21.	
1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86.1.17.	청주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00.5.9.	서울
3	12-1	한국과학창의재단 종합교육연수원	'12.5.25.	서울
4	12-2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부설 종합교육연수원 ('15.4.2. 명칭 변경)	'12.5.25.	전주
5	12-3	한국교총 부설 종합교육연수원	'12.5.25.	서울
6	12-4	현대인재개발원 부설 종합교육연수원	'12.12.17.	경기(용인)
7	13-1	동북아·독도교육연수원	'13.7.5.	서울
8	14-1	아침편지문화재단 부설 종합교육연수원	'14.12.12.	충주
9	15-1	한국발명진흥회 종합교육연수원	'15.12.31.	서울
10	15-2	한국개발연구원 종합교육연수원	'15.12.31.	세종
11	16-1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부설 종합교육연수원 ('20.9.29 명칭 변경)	'16.12.30.	경기(광주)
12	17-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종합교육연수원	'17.7.21.	대구
13	18-1	통일교육원 종합교육연수원	'18.12.28.	서울
14	19-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종합교육연수원	'19.12.24.	서울
15	21-1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교육종합연수원	'21.4.12.	공주
16	21-2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	'21.4.12.	서울

3. 대학부설교육연수원 현황(79개 기관)

순	연 수 원 명	인가일
1	전주교육대학교 부설 교육연수원	'63.2.20.
2	진주교육대학교 부설 교육연수원	'63.2.20.
3	서울교육대학교 부설 교육연수원	'64.2.21.
4	대구교육대학교 부설 교육연수원	'64.2.21.
5	경인교육대학교 부설 교육연수원	'64.2.21.
6	광주교육대학교 부설 교육연수원	'64.2.21.
7	춘천교육대학교 부설 교육연수원	'64.2.21.
8	청주교육대학교 부설 교육연수원	'64.2.21.
9	공주교육대학교 부설 교육연수원	'64.2.21.
10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64.2.21.
11	부산교육대학교 부설 교육연수원	'63.4.1.
12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 교육연수원	'09.11.11.
13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64.2.21.
14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64.2.21.
15	경북대학교 교육연수원	'64.2.21.
16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64.2.21.
17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64.2.21.
18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64.2.21.
19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64.2.21.
20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64.2.21.
21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64.2.21.
22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15.3.1 명칭변경 공과대학 → 사범대학)	'64.2.21.
23	부경대학교 부설 교육연수원	'64.2.21.
24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72.9.25.
25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72.12.29.
26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95.6.11.
27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95.6.11.
28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95.6.11.
29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95.6.11.
30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95.6.11.
31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설 교육연수원	'95.6.11.
32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95.6.11.
33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설 교육연수원	'95.6.11.
34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95.6.11.
35	국민대학교 부설 교육연수원	'95.6.14.

순	연 수 원 명	인가일
36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96.6.17.
37	상명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96.6.17.
38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96.6.17.
39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96.6.17.
40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설 교육연수원	'96.6.17.
41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설 교육연수원	'96.6.17.
42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설 교육연수원	'96.6.17.
43	강릉원주대학교 부설 교육연수원	'96.6.17.
44	한림대학교 부설 교육연수원	'96.6.17.
45	군산대학교 부설 교육연수원	'96.6.17.
46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96.6.17.
47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96.6.17.
48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96.6.17.
49	안동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96.6.17.
50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설 교육연수원	'96.6.17.
51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설 교육연수원	'96.6.17.
52	동의대학교 부설 교육연수원	'97.5.30.
53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설 교육연수원	'97.5.30.
54	계명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97.5.30.
55	용인대학교 부설 교육연수원	'97.5.30.
56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부설 교육연수원	'97.5.30.
57	목포대학교 부설 교육연수원	'97.5.30.
58	상지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설 교육연수원	'98.7.3.
59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설 교육연수원	'98.7.3.
60	우석대학교 부설 교육연수원	'98.7.3.
61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설 교육연수원	'98.7.3.
62	신라대학교 부설 교육연수원	'98.7.3.
63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설 교육연수원	'98.7.3.
64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98.7.3.
65	동서대학교 부설 교육연수원	'99.7.9.
66	배재대학교 부설 교육연수원	'99.7.9.
67	한신대학교 부설 교육연수원	'99.7.9.
68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설 교육연수원	'99.7.9.
69	호서대학교 부설 교육연수원	'99.7.9.
7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교육연수원	'99.7.9.
71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설 교육연수원	'00.9.7.
72	경동대학교 부설 교육연수원	'01.8.1.
73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설 교육연수원	'02.10.9.
74	건양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설 교육연수원	'03.1.27.
75	한밭대학교 부설 교육연수원	'04.2.24.
76	한경대학교 부설 교육연수원	'04.10.2.
77	가톨릭대학교(국제캠퍼스) 부설 교육연수원	'07.7.1.
78	대진대학교 교육연수원	'09.11.11.
79	극동대학교 교육연수원	'09.11.11.

4. 원격교육연수원 현황(29개 기관) ※ 교육청 설치기관 제외

순	인가(지정)번호	연 수 원 명	인가(지정)일
1	00-12	한국교원캠퍼스	'00.12.1.
2	00-13	유니텔 원격교육연수원	'00.12.1.
3	01-3	교육사랑원격교육연수원	'01.6.8.
4	3	서울대학교사범대학 부설 교육행정연수원	'01.10.24.
5	8	공주대학교 부설 원격교육연수원	'01.10.24.
6	11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종합교육연수원	'01.10.24.
7	1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설 종합교육연수원	'01.10.24.
8	01-6	티처캠퍼스(Teacher campus)	'01.11.14.
9	02-2	티처빌원격교육연수원	'02.5.8.
10	02-5	카운피아원격교육연수원	'02.5.8.
11	02-9	티스쿨 원격교육연수원	'02.11.13.
12	02-10	한국교총원격교육연수원	'02.12.18.
13	03-1	참교육원격교육연수원	'03.3.26.
14	03-3	한국교원연수원	'03.11.1.
15	03-4	통일교육원	'03.12.30.
16	26	경인교육대학교 부설 교육대학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	'04.2.26.
17	04-3	뇌교육원격교육연수원	'04.7.15.
18	06-5	한국발명진흥회 부설 원격교육연수원	'06.7.10.
19	07-1	YBM원격교육연수원	'07.9.1.
20	07-5	티처원 원격교육연수원	'07.9.1.
21	09-3	EBS 원격교육연수원	'09.9.17.
22	10-1	한국저작권 위원회 원격교육연수원	'10.7.7.
23	10-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격교육연수원	'10.7.7.
24	10-3	아이스크림 원격교육연수원	'10.7.7.
25	11-2	에듀니티 행복한 연수원	'11.7.18.
26	12-1	한국과학창의재단 원격교육연수원	'12.6.28.
27	12-2	하이컨텐츠 원격교육연수원	'12.6.28.
28	17-1	티셀파 원격교육연수원	'17.7.5.
29	18-1	창비교육 원격교육연수원	'18.12.28.

1. 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제3조 관련)

영역	핵심역량	정의 및 역량 요소	주제(예시)	비율(%)
기본 역량	성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소양과 자질을 이해하고,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해 성찰하는 역량 - 교육 철학, 교직 윤리, 자기 관리, 교직 생애 관리, 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학 소양 ▫ 교육관, 사회관, 교직원 ▫ 생애주기 자기관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5~15
	교사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사회 비전 및 국가 교육정책을 이해하고, 교사로서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 세계 교육 동향, 교육 정책, 교육 현안, 사회 및 환경 변화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사회 및 환경변화와 교육 ▫ 세계 주요국 교육 동향 ▫ 교육정책 및 교육 현안 ▫ 교육 혁신 사례 ▫ 민주시민교육 ▫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10~15
	(자율)		▫ 연수기관 자율 편성	15~20
	영역 소계			
전문 역량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해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고 수업을 개선하는 역량 - 교육과정 이해, 교수-학습 설계, 학습자 특성 이해, 수업 설계, 학생 평가(「교원 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라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의 전공내용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재구성 ▫ 학습자 중심 수업 설계 ▫ 과정 중심 평가 ▫ 수업 혁신 ▫ 학습부진학생 지도 	15~20
	생활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성장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학교 생활 적응을 유도하고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을 위하여 상담·지도하는 역량 - 학생 상담, 생활지도, 진로지도, 학생 공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상담 ▫ 진학·진로 지도 ▫ 학교폭력 예방 ▫ 학생자살 예방 ▫ 학교 부적응학생 지도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이해교육(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 교육 포함) *안전교육 	10~15
	교육공동체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적 학교 공동체 운영에 참여하고, 학부모 및 지역 사회와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는 역량 - 학부모 상담, 학급 운영, 학교 업무, 지역사회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 담임 업무 ▫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 ▫ 학생 인권 존중 ▫ 교육 법규 이해 	10~15
	(자율)		▫ 연수기관 자율 편성	15~20
영역 소계				50~70

*는 필수과목

2. 수석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제4조 관련)

영역	핵심역량	정의 및 역량 요소	주제(예시)	비율(%)
기본 역량	성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소양과 자질을 이해하고,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해 성찰하는 역량 - 교육 철학, 교직 윤리, 자기 관리, 교직 생애 관리, 교직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학 소양 ▫ 교육관, 사회관, 교직관 ▫ 생애주기 자기관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5~15
	수석교사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사회 비전 및 국가 교육정책을 이해하고, 수석교사로서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 세계 교육 동향, 교육 정책, 교육 현안, 사회 및 환경 변화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사회 및 환경변화와 교육 ▫ 세계 주요국 교육 동향 ▫ 교육정책 및 교육 현안 ▫ 교육 혁신 사례 ▫ 민주시민교육 ▫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10~15
	(자율)		▫ 연수기관 자율 편성	15~20
	영역 소계			
전문 역량	교육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직 전문가로서 교육과정, 교수 - 학습, 학생지도, 장학 등에 관해 연구 개발하는 역량 - 교육과정 연구, 학습자 특성 연구, 교재 연구, 수업 연구, 연수, 학습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재구성 연구 ▫ 수업 혁신 연구 ▫ 초임교사 멘토링 연구 ▫ 학습환경 조성 연구 ▫ 학습부진학생 지도 연구 ▫ 다문화교육 연구 ▫ 교내 학습공동체 조직 및 운영 	15~20
	수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들의 수업 개선 활동에 대한 컨설팅 역량 - 수업 컨설팅, 수업 혁신 지원, 수업 분석 및 평가, 연구 수업, 교내 장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분석 및 수업 평가 ▫ 교내 수업 개선 컨설팅 ▫ 교외 수업 개선 컨설팅 ▫ 학년별 수업 지원 ▫ 교과별 수업 지원 	15~20
	생활지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진로지도 활동에 대한 컨설팅 역량 - 생활지도 컨설팅, 생활·진로지도 지원, 생활지도 분석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생활지도·상담 지원 ▫ 생활지도 컨설팅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이해교육(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 교육 포함) *안전교육 	5~10
	(자율)		▫ 연수기관 자율 편성	15~20
영역 소계				50~70

*는 필수과목

3. 교감·원감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제5조 관련)

영역	핵심역량	정의 및 역량 요소	주제(예시)	비율(%)
기본 역량	성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소양과 자질을 이해하고,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해 성찰하는 역량 - 교육 철학, 교직 윤리, 자기 관리, 교직 생애 관리, 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학 소양 ▫ 교육관, 사회관, 교직원 ▫ 생애주기 자기관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5~15
	교감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사회 비전 및 국가 교육정책을 이해하고, 교감으로서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 세계 교육 동향, 교육 정책, 교육 현안, 사회 및 환경 변화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사회 및 환경변화와 교육 ▫ 세계 주요국 교육 동향 ▫ 교육정책 및 교육 현안 ▫ 교육 혁신 사례 ▫ 민주시민교육 ▫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10~15
	(자율)		▫ 연수기관 자율 편성	15~20
	영역 소계			
전문 역량	교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을 보좌하여 학교 업무를 운영하는 역량 - 학교 행정·회계 이해, 업무 절차 이해, 행정 업무 조정, 교육법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계획 관리 ▫ 학교 행정 업무시스템 ▫ 학교 운영 관련 법규 ▫ 학교 재무·회계 ▫ 교무행정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 학교 업무분장 	15~20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장학 활동을 지원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역량 - 교육과정 운영, 교내 장학, 연수 지원, 다문화·인성 교육, 수업 혁신, 교수-학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과정 운영 ▫ 연구 수업 관리 ▫ 자율 장학 및 교내 연수 ▫ 학생 인권 존중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역량강화 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이해교육(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 교육 포함) *안전교육 	10~15
	업무 조정 및 갈등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학내 조직을 관리하고,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량 - 조직 관리, 인사 관리, 갈등 관리, 교육 활동 침해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인사·복무 관리 ▫ 학교 계약직 및 교육 공무원 관리 ▫ 교내 위원회 관리 ▫ 교직원 갈등 관리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 학교 민원 예방 및 대응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강화 교육 	10~15
	(자율)		▫ 연수기관 자율 편성	15~20
	영역 소계			

*는 필수과목

4. 교장·원장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제6조 관련)

영역	핵심역량	정의 및 역량 요소	주제(예시)	비율(%)
기본 역량	성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소양과 자질을 이해하고,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해 성찰하는 역량 - 교육 철학, 교직 윤리, 자기 관리, 교직 생애 관리, 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학 소양 ▫ 교육관, 사회관, 교직원 ▫ 생애 주기 자기관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5~15
	교장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사회 비전 및 국가 교육정책을 이해하고, 교장으로서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 세계 교육 동향, 교육 정책, 교육 현안, 사회 및 환경 변화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사회 및 환경 변화와 교육 ▫ 세계 주요국 교육 동향 ▫ 교육정책 및 교육 현안 ▫ 교육 혁신 사례 ▫ 민주시민교육 ▫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10~15
	(자율)		▫ 연수기관 자율 편성	15~20
	영역 소계			
전문 역량	교육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교육 혁신 전략 및 성과를 관리하는 역량 - 교육 혁신, 학교교육 계획, 성과 관리, 학교문화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 비전 및 목표 관리 ▫ 국내외 학교교육 혁신 사례 ▫ 수업혁신 지원 사례 ▫ 다문화 교육 ▫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 ▫ 학생 인권 존중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역량강화 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이해교육(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 교육 포함) 	15~20
	조직·인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내 인사 및 조직을 관리하고, 학내 제반 상황과 분쟁을 조정·해결하는 역량 - 인사 관리, 조직 관리, 갈등 관리, 분쟁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인사 관리 ▫ 학교 조직 관리 ▫ 동기부여 및 조직 혁신 ▫ 학내 갈등 관리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강화 교육 	10~15
	학교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최고 대표자로서 학교업무를 통할하고 학교 경영을 혁신하는 역량 - 시설 관리, 재무·회계 관리, 교육법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사무 관리 ▫ 학교 시설·설비 관리 ▫ 학교 재무·회계 관리 ▫ 학교 운영 관련 법규 ▫ 학부모 학교 운영 참여 ▫ 지역사회 자원 활용 *안전교육 	10~15
	(자율)		▫ 연수기관 자율 편성	15~20
영역 소계				50~70

*는 필수과목

붙임 3

임용예정자 및 신규교사 연수 교육과정(예시안)

직무영역 (비율) (시수)	핵심역량	연수 교과목(학교급)*	시수
기본소양 (10~20%) (8~16H)	교직소양	◦ 미래사회 변화와 교육 트렌드 이해	2
		◦ 교육정책 방향 이해(국가/시도)	2
		◦ 교원의 인사관리와 복무규정	2
		◦ 공직자의 행동강령과 청렴의무	2
	리더십·소통	◦ 의사소통과 협업체제 구축 ◦ 갈등관리 및 대인관계 능력	2 2
	학습공동체	◦ 수업혁신과 교사 학습공동체	2
	감성심미	◦ 인문소양 / ◦ 회복적 치유	2
소계			16H
교수역량 (30~40%) (24~32H)	교수	◦ 교육과정 편성·운영 ◦ 교육과정 이해 및 재구성 능력 ◦ 교과별 핵심 원리 및 내용 이해 ◦ 평가문항 제작 및 분석(중등)	3 3 3 3
	학습지원	◦ 학습 동기 유발 기법 ◦ 기본학습 훈련 방법 ◦ 교과지도 관리 및 대응전략	3 3 3
	수업	◦ 창의적인 교수학습 운영 사례(중등) ◦ 수업설계 및 수업지도 방법 ◦ 최신 수업모형 개발 및 적용 ◦ 최신 수업기법(토의·토론학습) ◦ 첨단 수업매체 활용법	3 2 2 2 2
소계			32H
학생이해 역량 (30~40%) (24~32H)	심리상담	◦ 학생심리검사 적용 및 활용 ◦ 학부모 상담 사례 및 방법	2 2
	생활지도	◦ 학생생활지도 이해와 실제 ◦ 인성교육의 이해와 실제 ◦ 성교육 및 성희롱·성폭력·학교폭력 예방과 대처 ◦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 ◦ 부적응 학생의 이해와 지원 전략 ◦ 다문화교육의 이해	3 3 3 3 3 3
	진로지도	◦ 학생적성 개발과 지도 ◦ 미래사회와 직업세계 ◦ 진로진학 상담의 실제 ◦ 진로교육의 이해와 실제	2 2 3 3
소계			32H
교직실무역 량 (10~20%) (8~16H)	학급경영	◦ 학급경영과 인간관계 ◦ 학급경영 기법과 운영사례 ◦ 학급 규칙 이해 및 실천 방안	2 2 2
	교무행정관리	◦ 교무 학사 및 사무관리의 이해 ◦ 업무포털 시스템 활용 방법	2 2
소계			10H
합계			80H*

* 학교급의 ()는 해당 학교급에 집중 또는 유지가 요구되는 연수과목

※ 영역별로 가감하여 80시간 내외 편성

□ **수강 절차**

준비	정보제공 동의하기	①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 접속하기 ② 로그인 ③ [과정안내]-[교육과정 안내] 페이지에서 “K-MOOC 특수분야 직무연수” 클릭 ④ 제3자 정보제공 동의하기(최초 1회) ※ 특수분야 연수 대상자 확인 절차(교원 및 교육전문직)
	회원 가입하기 K-MOOC	① K-MOOC(http://www.kmooc.kr/) 접속하기 ② “회원가입” 클릭 ⇒ 약관 동의 ⇒ 회원정보 입력 ③ 회원정보(E-MAIL) 확인 후 인증 절차 완료
과정 수강하기	[방식 1] 중앙교육연수원 “K-MOOC 특수분야 직무연수 전용 페이지” 내에서 연동 ⇒ 로그인 [방식 2] K-MOOC 특수분야 직무연수 바로가기 (http://www.kmooc.kr/org/neti) ⇒ 로그인 ① 듣고 싶은 과정 선택 → ② 수강 신청 → ③ 과정 수강 후 이수 완료	
이수증 발급하기	이수증 발급 메뉴 선택 ⇒ 이수증 열람 후 발급	
【 유의사항 】		
① (회원가입) 중앙교육연수원을 통한 로그인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 등 교원임을 확인하는 회원가입 절차 1회 반드시 필요 ② (이수증 발급 기준) 평가(이수)계획의 이수기준 점수 이상 획득 시 이수 가능 ③ (수강신청 기간) K-MOOC의 특성 상 개강 이후에도 수강신청이 가능한 하나, 연수종료 최소 1개월 전까지 수강신청을 권장함 ④ (개인정보) 이수자 개인정보(나이스 개인번호, 소속기관 등)는 반드시 현행화		

□ **2021년 상반기 운영 강좌 : 17개 과정**

연번	과정명	강좌운영 기간	기관명
1	논어와 현대 사회·리더를 위한 논어 읽기	'21. 3. 3 ~ 6.15	서울대학교
2	문학/영화와 인공지능	'21. 3. 3 ~ 5.11	서울대학교
3	빅데이터의 세계, 원리와 응용	'21. 3. 2 ~ 6.14	이화여자대학교
4	상담학 들어가기	'21. 3. 3 ~ 6. 1	서울대학교
5	심리학 START	'21. 3. 2 ~ 6.13	충남대학교
6	인공지능의 기초	'21. 3. 3 ~ 5. 4	서울대학교
7	철학과 인공지능	'21. 3. 3 ~ 5. 4	서울대학교
8	한국 교육의 시대적 요청 I	'21. 3. 8 ~ 5. 2	고려대학교
9	한국 교육의 시대적 요청 II	'21. 5. 3 ~ 6. 27	고려대학교
10	건축으로 읽는 사회문화사	'21. 3. 2 ~ 6. 14	이화여자대학교
11	수어의 이해	'21. 3. 2 ~ 6. 18	대구대학교
12	애니메이션의 이해	'21. 3. 2 ~ 6. 14	이화여자대학교
13	영재교육과 창의성 계발	'21. 3. 1 ~ 6. 4	부산대학교
14	음악은 왜 치료적인가?	'21. 3. 1 ~ 6. 13	성신여자대학교
15	재미있는 글로벌 경제 기행	'21. 3. 1 ~ 6. 4	부산대학교
16	행복심리학	'21. 3. 3 ~ 6. 8	서울대학교
17	환경의 역습! 원인과 우리의 대처	'21. 3. 2 ~ 6.11	건국대학교

□ **담당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K-MOOC 운영실)**

※ (사업 및 서비스 이용 문의) 02)3780-9961 / info_kmooc@nile.or.kr

※ 과정 수강, 이수 등에 따른 문의는 강좌별 운영대학으로 문의

붙임 5

교육부 소관 국정과제 및 연수과제 목록

국정 과제	실천 과제	연수 과정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49-2.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학교 및 초등 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 학교돌봄터 사업 활성화 협조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50-1. 학생 중심 교육과정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의 수업·평가 역량 강화 지원 · 2019 개정 누리과정 이해 및 적용 ·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 학교예술교육 역량 강화 · 학교체육교육 역량 강화
	50-2. 진로맞춤형 고교체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학점제의 이해 및 교육과정 역량 제고
	50-3. 기초학력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활용 지도 · 국어, 수학(읽기, 쓰기, 셈하기) 학습부진 교수학습 전략 · 기초 학력 향상을 위한 체험 활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50-4. 혁신학교 및 자유학기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학교/혁신교육지구의 이해와 실제 · 자유학기제 운영 내실화 및 역량 강화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51-2. 사회 취약계층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지도 역량 강화 · 교원의 다문화교육 이해 제고 ·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도 역량 강화 ·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역량 강화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 교육혁신	52-3. 직업계고 학점제 단계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계고 교원 부전공 자격 연수 ·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전문가 양성 연수 · 직업계고 학점제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 연수
	52-4.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및 취업지도 역량강화 연수 · 신규 취업지원관 연수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구현	54-1. 지식정보·융합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 정보(SW·AI) 교육 담당교원 역량 강화
	54-3.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수업 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이해와 실제
	54-4.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 및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 안전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안전연수 운영 · 초등 생존수영실기교육 지도역량 강화 연수
	54-5. 미래사회 대비 원격교육 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미디어교육의 이해와 실제 ·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역량 강화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76-1.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및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제작·적용
	76-5. 단위학교 자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원 인식 개선 연수 운영

붙임 6

법정 의무 교육 : 교육감 계획 수립 및 학교장 실시 의무

내 용	대 상	연간 시수	대면포함	법 률 근거(약칭)	소 관 부 처
안전 교육	교직원	3년 마다 15시간 이상		학교안전법 제8조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2조	교육부(학교안전총괄과) 044-203-6357
장애인식개선 교육	교직원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장애인학대·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교직원	연 1시간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2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교직원	1시간 이상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보건복지부(아동학대대응과) 044-202-3388
학교폭력예방교육	교직원	학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교육부(학교생활문화과) 044-203-6975
성희롱·성폭력·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직원	각 연 1회, 각 2시간 이상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제19조 성폭력방지법 제5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 02-2100-6149 여성가족부(권익지원과) 02-2100-6395 여성가족부(권익기반과) 02-2100-6443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교직원	3시간 이상 (실습2시간)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의1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7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	교직원	연 1회 이상		청탁금지법 제19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2조	국민권익위원회(청탁금지제도과) 044-200-7704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교직원	연 1회, 1시간 이상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긴급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의3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1
부패방지교육	공직자	연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	국민권익위원회(청렴정책총괄과) 044-200-7612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	교원	규정 없음		공교육정상화법 제5조	교육부(학교정책과) 044-203-6441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직원	연 1회 이상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교육부(교원정책과) 044-203-6943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	교직원	연 1회 이상		정보공개법 제6조제5항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의2	행정안전부(정보공개정책과) 044-205-2267
다문화 교육	교원 및 교육공 무원	규정 없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 10조의2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02-2100-6372
인성 교육	교원	1시간 이상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교육부(민주시민교육과) 044-203-6701
학습부진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교원	규정 없음		초·중등교육법 제28조	교육부(학교정책과) 044-203-6450

※ 표에 제시되지 않은 관계 법령으로 인한 의무 교육 추가될 수 있음

※ 학교장 실시 권장 교육: 양성평등교육, 자살예방교육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미 실시 교원은 별도의 관련 원격연수 수강하도록 학교장이 안내

※ 부패방지교육 시, 교육대상자가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등인 경우에는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 포함되어야 함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 교육: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순회교사는 소속 기관의 장이 실시